중국 인삼 수입통관 절차 조사자료

작성처 : 베이징aT센터

□ 인삼 수입 유관 부서

○ 인삼 제품 수입과 관련되는 업무는 주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(CFDA)와 품질감독검역총국, 해관 등이 관할

- 종류에 따라 약재 또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CFDA나 위생가족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득해야 함.

□ 약재인삼 수입비준서 발급절차

○ 인삼을 약재로 중국에 수입 할 경우, 우선 보건식품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함. 함

- 보건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CFDA가 공인한 검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CFDA가 공인한 검사기구는 모두 10곳임.

○ 5년근 이하의 인삼을 신자원식품 원료로 수입하거나, 5년근 이하의 인삼을 가공해 만든 제품을 신자원식품으로 수입하는 경우, CFDA의 상급기관인 위생가족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.

○ 약재 인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신청인(신고책임자)은 반드시 중국의 '약품생산허가증' 또는 '약품경영허가증'을 취득한 약품생산기업 및 약품유통기업이어야 함

○ 검사기관은 안전성, 동물실험, 인체실험, 성분검사, 위생검사, 안정성검사 등을 시행 ⇒ 검사기관 검사는 재료준비 및 상세분석 등의 이유로 1년까지 걸릴 수 있음.

《인삼제품 수입비준서 발급절차》

필요항목	세부내용
① 의뢰	제조판매사가 신고책임자에게 의뢰조사
⬇	
②검사의뢰	신고책임자가 CFDA공인 검사기관에 의뢰
⬇	
③검사보고서	검사기관이 검사 후 신고책임자에게 검사보고서 교부
⬇	
④허가신청	신고책임자가 CFDA에 신청(신청서류목록 별첨)
⬇	
⑤심사의뢰	CFDA가 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
⬇	
⑥심사의견서	심사위원회가 CFDA에 의견서 교부
⬇	
⑦결과통보	CFDA가 신고책임자에 결과통보 (불합격-보충자료통지)

《검사기관 검사비용 및 소요시간》

구분	검사비용	소요시간
접수	1만元	15~20일
독성검사	5~6만元	35~50일
기능검사	5만元	35~50일
위생검사	2~2.5만元	20일
안정성검사	2~2.5만元	120~150일
기타검사	1~2만元	30~36일

※ Source : CFDA

《CFDA에 제출할 서류 목록》

- 수입보건식품 등록신청서
- 신청인 영업집조 또는 기타 합법등기증명문서의 사본
- 제품명칭이 타제품의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증명 자료
- 신청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서
- 상표 등록 증명서
- 제품 연구 개발 보고서
- 제품 조제법(원료 및 부원료) 및 조제 근거
- 효능성분, 지표성성분, 함량과 이를 증명할 검사방법
- 생산 공장도면 및 유관 연구자료
- 제품 품질표시 및 구성설명
- 포장재료 종류, 명칭, 품질표준 및 선택 근거
- 검사기구가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유관 자료
- 라벨, 설명서 샘플
- 기타 비준에 도움이 되는 자료
- 포장된 제품 샘플 2개
- 생산국의 생산품질관리 기준을 통과했다는 증명문서
- 외국기업 상주 중국 대표기관 등기증 사본 혹은 위탁 대리기관의 영업집조 사본
- 제품 생산지에서 1년이상 판매한 증명서류(공증기관과 중국대사관 확인 필수)
- 생산국 혹은 국제기구의 국제조직의 관련 표준
- 생산지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포장, 라벨, 설명서 샘플

□ 인삼 제품 통관

○ 5년근 이상의 약재 인삼은 약품 및 보건식품과 관련한 규정에 의한 수입절차를 따라야 함. 약재 인삼은 반드시 지정된 수입항구의 통관을 거쳐야 하며, CFDA기준의 수입약품통관 규정에 의한 통관수속을 거쳐야 함.

○ 「중국 세관 신고 실용 안내」의 대응 HS 번호에 따라 관리감독증서 발급을 신청하며 해관 신고서, 영수증, 포장 명세서, 계약서 등 화물 자료를 함께 해관에 신고

○ 입항 수속 : 먼저 상품검사수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상품검사를 받고, 최종적으로 상품검역절차가 진행 ⇒ 상품검역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, 화물은 세관에 들어올 수 없으며 반송조치 당함

- 상품 검사 : 화물 감독 관리 구역에서 신고된 화물에 대해 포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, 수출국이 발급한 위생 면역 증서, 원산지 증서, 품질 보증서 등을 구비했는지 등을 심사 대조를 하는 절차

- 상품 검역 : 검험검역국이 시행하는 조사로, 표본 검사 혹은 제출 검사 중 한 가지 선택 가능

  ① 표본검사 : 검험검역국의 직원이 창고에서 화물 총수의 1000분의 1에 대해 표본 검사를 실시

  ② 제출검사 : 수입업체가 모든 품종의 6~12개 제품을 샘플로 제출해야 하며 이 제품들이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. (남은 샘플은 검험검역국이 보관)

《수입화물이 중국에 도착하기 전 인삼 기업이 제공해야 할 증명서/허가서》

- 원산지 증서
- 생산국 공식 위생 증서
- 생산업체가 작성한 성분표
- 검사기관의 검사 보고서
- 생산국의 판매 등록 및 비준 증명서
- 원포장 라벨 견본 1부, 중문, 영문 라벨 견본 3부
- 생산업체 공식 검역 증서
- 제공해야 할 기타 문서, 자료

※ Source : 해관정보망

□ 인삼 수입 관세

○ 인삼 제품의 수입관세는 3~20% 범위 내에서 품목별로 각기 상이함 ⇒ 마른 인삼, 생인삼과 홍삼 제품의 경우 20%

○ 해관 분류센터는 북경 해관에 설치돼 있으며, 상해/광주/천진/대련에 하위 센터가 설치돼 있음 ⇒ 각 센터는 해관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분류함

《인삼제품의 수입 관세》

상품구분	최저세율	부가가치세율
인삼 로얄제리 제제	3%	17%
제약용 인삼엑기스, 즙	20%	17%
인삼사포닌	6.5%	17%
인삼추출물	6.5%	17%
생삼 또는 마른 서양삼	7.5%	13%
생삼 또는 마른 야생 산삼	20%	13%
기타 생삼	20%	13%
기타 마른 인삼	20%	13%
기타 성분이 포함된 한약술	3%	17%

※ Source : 해관정보망